[붙임4]

■ 채용업무처리세칙 [별지 제1호서식](제7조 관련)

채용결격사유 확인 체크리스트

한국교통안전공단「인사규정」상 **채용결격여부에 해당하는 자는 임용이 불가**함에 따라 **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**합니다. 아래의 질문과 가이드를 활용하여 **체크리스트 작성 후 회신**해주시기 바라며,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임용취소 또는 해임요구 등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.

<해당되는 문항 □에 체크>

1. 피성년후견인 해당여부 ---------- 해당 □ / 해당없음 □
   ※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개시 또는 한정후견개시 심판 여부에 근거하여 판단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해당여부 ---------- 해당 □ / 해당없음 □
   ※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근거하여 판단
3-1.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)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해당여부 ---------- 해당 □ / 해당없음 □
3-2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해당여부 ---------- 해당 □ / 해당없음 □
3-3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해당여부 ---------- 해당 □ / 해당없음 □
3-4. 공단 또는 전 직장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「형법」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해당여부 ---------- 해당 □ / 해당없음 □
3-5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해당여부 ---------- 해당 □ / 해당없음 □
   가.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  나.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
   다.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 범죄
3-6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 해당여부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) ---------- 해당 □ / 해당없음 □
   가.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  나.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 대상 성범죄
   ※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(crims.police.go.kr)에서 개인의 범죄, 수사경력을 본인열람하고 확인한 내용을 근거하여 판단
4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해당여부 ---------- 해당 □ / 해당없음 □
5. 공단 또는 전 직장에서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해당여부 ---------- 해당 □ / 해당없음 □
6. 공단 또는 전 직장에서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해당여부 ---------- 해당 □ / 해당없음 □
7.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해당여부 ---------- 해당 □ / 해당없음 □
8.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에 해당하는지 ---------- 해당 □ / 해당없음 □

※ 해당 기재사항은 채용결격사유 해당여부 확인 자료로만 활용됩니다(이외 용도 활용 불가)

년 월 일

지원분야 : 지원자 성명 : (서명)